수도권자원순환센터 유가물 창고 보수 등 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2. 7.

E-순환거버넌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목 차

- I. 과제명
- Ⅱ. 과업의 목적
- Ⅲ. 과업내용
- IV. 계약금액
- V. 용역비 지급방법
- VI. 계약효력
- Ⅶ. 일반사항
- Ⅷ. 기타사항

I . 과제명

○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공장동 보수 공사 추진

NO	과제명 (요약)
1	유가물 보관장소 (후면 출하장) 보강
2	공장 내부 바닥 도색 (보행자 통로 구분)
3	공장 외부 바닥 도색 (보행자 통로 구분)

Ⅱ. 과업의 목적

NO	과업의 목적 (요약)		
1	유가물 보관장소 (후면 출하장) 보강을 통해 작업 안정성 유지 - 유가물 보관장 노후화로 인한 유가물 혼입 방지 및 안정성 확보 -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종류別 회수/보관 편리성 개선)		
2	공장 내부 바닥 도색 (보행자 통로 구분) - 지게차/보행자 통로 구분하여 지게차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공장 외부 바닥 도색 (보행자 통로 구분) - 야적장 측면에 보행자 통로 설치하여 폐가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외부 방문객 증가 예상 이미지 제고

Ⅲ. 과업내용

가. 과업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2. 7. 20 ~ 8. 20로 한다.

- ※ 상세 일정 및 내용은 실측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공사용역 범위 및 기간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공사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구분	공사용역의 범위 (요약)

	유가물 보관장소(후면 출하장) 보강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H빔	300*200	M	90	
	철판	8T이상	M2	300	
	장비사용		대	6	
	부자재		식	1	
	작업인력투입		인	21	
2	공장 내부 바닥 도색 100M (보행자 통로 구분) <# 첨부 참조>				
3	공장 외부 바닥 도색 110M (보행자 통로 구분) <# 첨부 참조>				

-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공급처에서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공사용역의 범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 본 공사는 외부 보수공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관련 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 ※ 본 공사의 시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조합의 승인을 얻어 공사 시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계약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 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Ⅳ. 배정예산 [VAT 별도]

공사 용역행위에 대한 계약금액은 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으로 한다.

V. 용역비 지급방법

공사용역비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 선급금 : ₩ 37,500,000원 (계약금액의 50%) 나) 중도금 : ₩ - 원 (계약금액의 0%)

다) 잔 금 : ₩ 37,500,000원 (계약금액의 50%)

VI. 계약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Ⅶ. 일반사항

1) 착수

시공자는 계약 후 견본 시공 등 후 당사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시공한다.

2) 진행보고

시공자는 진행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요청시 "을"은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완료전에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3) 감독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시공하자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시공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한다.

Ⅷ. 기타사항

- 1) 현장설치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로 한정한다.
- 2) 시설물 공사를 위한 장비는 사전 승인 후 출입한다.
- 3)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 4) 공사전 공사 일정표를 사전 제출토록 한다.
- 5) 공사진행 검토는 센터 및 조합에 최종점검후 대금지불 토록한다.
- 6)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등 사전허가를 득한후 실시한다.
- 7) 하자보수는 2년으로 한다.
- 8) "갑"은 아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공사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가. "을"의 실정 변화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당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공사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
 -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9) 모든 자재는 KS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10) 공사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 발생 시 주변 정리 및 공사 잔재물의 처리는 "을"이 완벽히 처리토록 한다.
- 11) 계약 전/후에도 상호 간 충분히 논의(Meeting)하여 공사계획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며, 기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 계약당사자에게 알려 협의하여야한다.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보수 공사 前

NO	공사내용	사진	비고
1	유가물 보관장소 (후면 출하장) 보강 (방호 벽면 보수 포함, 8T이상)		
2	공장 내부 바닥 도색 (보 행자 통로 구분)		
3	공장 외부 바닥 도색 (보 행자 통로 구분)		

